

『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1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6월 13일

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○ 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설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의한 위임사무 신설

- 읍면동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출입국관리법이 2010년 5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의거 출입국사실증명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기 위해 자체 내부위임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 없음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